

보 고 사 항

□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사항

○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97. 10. 16

(화순군의회 공고 1997 - 7호)

<공고내용>

- 집회일시 : '97. 10. 21 (화) 11:00

- 장 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

'97. 9. 27 자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 | | | | |
|---------|----------|---|--------------|
| ○ 이 병 일 | 기획감사실장 | → | 공로연수 |
| ○ 이 수 철 | 내무과장 | → | 기획감사실장 |
| ○ 최 영 옥 | 문화공보실장 | → | 내무과장 |
| ○ 최 성 기 | 온천개발사업소장 | → | 문화공보실장 |
| ○ 김 재 월 | 화순읍장 | → | 온천개발사업소장 |
| ○ 이 원 용 | 경영정책실장 | → | 도시주택과장 |
| ○ 김 중 철 | 도시과장 | → | 농업정책과장 |
| ○ 배 병 선 | 의회 사무과장 | → | 화순읍장 |
| ○ 민 병 향 | 의회 전문위원 | → | 의회 사무과장 |
| ○ 김 언 태 | 동면 부면장 | → | 의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

□ 제56회 화순군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 '97. 7. 29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97. 8. 19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제 1513 호
-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97. 7. 29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97. 8. 19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제 1514 호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 '97. 7. 29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97. 8. 19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제 1515 호
-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97. 6. 30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97. 8. 19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제 1516 호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97. 6. 30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97. 8. 19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제 1517 호
-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97. 7. 29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97. 8. 19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제 1518 호
- 동복댐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 '97. 7. 29 집행부 이송
 - 결의안 송부처 : 광주 광역시장, 시의회, 전라남도지사, 도의회
내무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의장, 청와대

□ 각종의안발의 및 제출현황

○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7. 10. 16 발의

- 발의자 : 박 병 옥 의원외 2 인
- 회 기 : '97. 10. 21 ~ 10. 25 (5 일간)

○ 제57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7. 10. 16 발의

- 발의자 : 박 병 옥 의원외 2 인
- 출석요구내용 : 별 첨

○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97. 10. 22 발의

○ 주 문

화순군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활동기간 : '97. 10. 25 ~ 11. 21 (28일간)
- 구성인원 : 13 명

○ 제안이유

-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관련 공사 및 산림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의 계약관계, 시공상태, 준공후 관리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확인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의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 건설행정과 산림행정에 대하여 건실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추진을 유도 하고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며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기 위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7. 10. 16 의원발의

○ 주 문

화순군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97. 10. 21 ~ 10. 25 (5 일간)

○ 구성인원 : 13 명

○ 제안이유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기정예산 대비 3,755 백만원을 증액편성 코자한 예산으로서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로는 우리군의 장기 발전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문과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한 후 이를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것이 회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함.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0. 2 의원발의

○ 제안이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화순군 조례 제1494호(97. 7 . 18)호로 개정 공포됨에따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를 집행부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화순군 행정기구의 일부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명칭변경, 신설된 직제 삽입 및 폐지된 직제 삭제

- 총무위원회 소관중 경영정책실 삭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신설된 실과소 삽입 및 명칭변경
 - 신 설 : 농업정책과 — 삽 입
 - 명칭변경 : 도시과 → 도시주택과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
→ 자연 휴양림

○ 신성교 개축 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 - '97. 10. 17 군수제출

○ 제안이유

도곡면 소재 신성교는 농어촌 도로에 연결된 교량이라서 군 자체적으로 개축해야 하는바 총 사업비가 1,850 백만원이 소요돼 1차로 450백만원 (도비 150, 군비 300)을 확보 하였으나 미 확보된 1,400 백만원은 군 재정 형편상 일시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에서 1,000백만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채 발행규모 : 1,000 백만원
- 기 채 선 : 재정경제원
- 자 금 종 류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
- 이 율 : 연리 5.5 %
- 상 환 기 간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 환 재 원 : 군 비

○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 '97. 10. 9 군수제출

○ 제안이유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 광고물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골자

-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현 군정 조정위원회로 위임
- 광고대상 매체
 - ┌ 행정 공보물 : 화순소식지, 군정 소식지, 공과금고지서, 정기간행물
 - └ 공공 시설물 : 승강장, 지정 벽보판, 안내판 등
- 광고계약은 공개입찰 원칙, 응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 공공시설물에 허가없이 광고표시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벌칙 명시

○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0. 9 군수제출

○ 제안이유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등 군. 읍면간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사무의 소관을 화순군 조례 제1494호 (97. 7. 18)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화순군규칙 제890호 (97. 8. 12)로 공포된 화순군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임.

○ 주요골자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중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등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변경

- 산업과 소관 "농지전용신고수리" 사무와 건설과 소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의 사무를 신설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하여 읍면에 위임

· 군. 읍면간 사무배분의 합리적 재조정

- 재무과 소관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를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

°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군유 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군유 잡종

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군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군유 은의재산 발굴"의 사무는 읍면에 위임.

- 지적과 소관 "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사무는 읍면 위임
 -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의 사무는 읍면 위임
 -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재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하여 읍면에 위임
 - 건설과 소관 읍면위임사무중 "2,000만원 이하 공사 시행"을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 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을 실과소 공통 위임 사무로 함.
 -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중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삭제
 - 연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 도시계획법 제1항 제1조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로써 50㎡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연면적 200㎡미만인 축사와 연면적 100㎡미만인 창고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를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 로 개정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0. 7 군수제출

○ 제안이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의 정보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데 인식의 바탕을 두고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의 의거 '93년부터 행정전산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금년에는 지역정보 서비스센터 설치와 주전산기 도입을 위해 전산실을 구축 하였으며, '98년도에는 본청 실과소간 근거리 통신망을 구성 PC 통신 등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를 전담할 기구와 전문인력이 없어 이의 운용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91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승인시의 배치기준에는 다소 불부합하나 정원의 책정기준 (생활보호대상자 300가구 이상 읍면에 1명)에 미달한 읍면의 사회복지요원을 삭감 이를 군 본청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및 돌발 영세민 관리 업무등을 담당토록 하기 위함임.

○ 제안이유

화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함. (안 제2조)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0. 7 군수제출

○ 제안이유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전산업무를 전담할 기구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의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에 전담기구 (전산계) 설치를 승인 요구한 바 있는데

자치 12200-1734 (97. 9. 19)호로 전담기구 설치와 주전산기 관리 운영을 위한 정원이 승인 되었기 현 정보통신계에서 담당 하였던 전산관련 사무를 분리하면서 전산 전담기구에서 담당할 사무의 대강을 새롭게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제7조 내무과 분장 사무중 제10호 전산 및 통신에 관한사항 삭제하고,
제13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3. 행정통신 및 FAX 보안에 관한 사항
14.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5. 행정전산망 및 일반 데이터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통신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8. 일반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9. 주전산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0.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0. 7 군수제출

○ 제안이유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 범위를 확대 및 용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료를 50% 할인제를 시행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민영주차장 건설지원 촉진
 - 설치비 지원범위 확대 (안 제26조 제2항 제4호)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
 - 용자 한도액 상향조정 (안 제28조 제1항)
주차장 설치비 용자 한도액 20,000천원을 30,000천원까지 상향 조정
- 경자동차 보급 확대 (안 제10조 별표 1 비고 제5호)
 -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50% 할인

○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0. 7 군수제출

○ 제안이유

온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개정
(안 제3조)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 (안 제12조)

○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97. 10. 15 군수제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기 정 예 산 액	구 성 비	증 감
합 계		123, 112, 400	100. 0	19, 357, 353	100. 0	3, 755, 047
세 입	지 방 세	7, 558, 300	6. 1	7, 558, 300	6. 3	0
	세 외 수 입	30, 949, 150	25. 2	30, 949, 150	25. 9	0
	경상적세외수입	8, 848, 233	7. 2	8, 848, 233	7. 4	0
	임시적세외수입	22, 100, 917	18. 0	22, 100, 917	18. 5	0
	지 방 교 부 세	39, 650, 000	32. 2	38, 250, 000	32. 1	1, 400, 000
	지 방 양 여 금	11, 786, 905	9. 6	11, 786, 905	9. 9	0
	보 조 금	31, 308, 045	25. 4	29, 952, 998	25. 1	1, 355, 047
	국 고 보 조 금	21, 003, 457	17. 0	20, 488, 140	17. 2	515, 317
	시·도비보조금	10, 304, 588	8. 4	9, 464, 858	7. 9	839, 730
	지 방 채	1, 860, 000	1. 5	860, 000	0. 7	1, 000, 000
세 출	경 상 예 산	35, 522, 637	28. 9	35, 656, 256	29. 9	△ 133, 619
	인 건 비	16, 674, 376	13. 6	16, 857, 995	14. 1	△ 183, 619
	관 서 운 영 비	790, 338	0. 6	790, 338	0. 7	0
	경 상 적 경 비	18, 057, 923	14. 7	18, 007, 923	15. 1	50, 000
	사 업 예 산	77, 523, 468	62. 9	73, 634, 802	61. 6	3, 888, 666
	국고 보조 예산	30, 249, 885	24. 5	29, 523, 279	24. 7	726, 606
	지방양여금사업	13, 889, 982	11. 3	13, 889, 982	11. 6	0
	시·도비보조사업	9, 916, 716	8. 1	9, 104, 656	7. 6	812, 060
	자 체 사 업	23, 466, 885	19. 1	21, 116, 885	17. 7	2, 350, 000
	채 무 상 환	3, 998, 863	3. 3	3, 998, 863	3. 4	0
기타(국내)상환	3, 998, 863	3. 3	3, 998, 863	3. 4	0	
예 비 비	6, 067, 432	4. 9	6, 067, 432	5. 1	0	
예 비 비	2, 666, 567	2. 2	2, 666, 567	2. 2	0	
기 타	3, 400, 865	2. 7	3, 400, 865	2. 9	0	

○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97. 9. 26 군수제출

○ 주요내용

- 관내 폐지 학교중 교육장소, 수련장등 주민편의 행정과 공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향후 이용 가치가 있는 폐지학교를 매입코자 함

○ 매입대상 폐지학교

폐지 학교명	위 치	규 모		교 육 청 평가금액	비고
		대 지	건 물		
춘양초교 월평분교	춘양면 월평리	m ² 18,969	m ² 1,704	천원 113,684	
청풍초교 세청분교	청풍면 세청리	11,491	1,274	98,791	
계	2 개소	30,460	2,978	212,475	

○ 집행부 의견

주민복지시설 및 교육장소, 수련장등 주민편의 행정 및 공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매입하여 활용 코자 함.

○ 공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 - '97. 10. 7 군수제출

○ 주요내용

현 보건소가 모자보건센터 건물로 협소하며 건물 노후화로 증·개축이 어려워 환자진료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광덕 택지 개발지구내 보건소를 이·신축하여 미래 지향적인 쾌적한 공간을 확보 하므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공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을 상정함.

○ 사업개요

- 토지소재지 :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 번지(대지)
- 부지 총면적 : 6,839.4 m² (2,069평)
- 보건소 신축부지 : 660 m² (200평)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510평
- 소요 사업비 : 1,581 백만원
 - 기 확보액 : 1,266 백만원 (국비 868 도비 398)
 - 부족액 : 351 백만원 ('98 예산 확보 예정)

○ 추진개요

- 96. 2. 21 : 보건 복지 주민 이용 시설 종합화 계획 시달
- 96. 3. 30 : 보건소, 사회 복지관 종합화 계획서 제출 (보건복지부, 도)
- 96.12. 13 : 국비 보조금 내시 544 백만원 (명시이월)
- 97. 8. 27 : 국비 추가 보조 내시 722 백만원 (총국고 보조액 1,266 백만원)
- 97.10. ~ 11.20 : 기본설계 및 보건 복지부 심의 예정
- 97.12. ~ 98.1 : 실시설계 및 보건 복지부 심의 예정

□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회 기: '97. 10. 21(火) ~ 10. 25(土). (5일간)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97. 10. 21 (火) 11:00	개 회 식	○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 위원장, 간사 선출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7. 10. 22 (水)	휴 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조례안 심사
'97. 10. 23 (木) 10:00	1. 군정에대한 질문 및 답변	
'97. 10. 24 (金) 10:00	1. 군정에대한 질문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7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97. 10. 25 (土) 10:00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6.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계획 승인의건 11. 기타 일반 안건	○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간사 선출